

경기침체와 형사사법간의 관계: “IMF 외환위기”를 중심으로

기 광 도*

국문요약

이 연구에서는 경기침체가 범죄 및 형사사법체계의 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를 위하여 지난 1998년의 경기침체기간, 이른바 “IMF 외환위기”에 초점을 두고 경기침체와 대량실업이 범죄 및 형사사법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1990년부터 2005년까지의 시계열자료를 ARIMA 모형분석을 통하여 ‘IMF 외환위기’가 경제상황, 범죄발생, 그리고 형사사법에 미친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결과, 우리 사회에서는 1998년도의 경기침체로 인하여 실제로 범죄가 증가하기도 하였고, 범죄증가에 대한 우려도 고조되었으며, 이에 대응하여 형사사법기관은 기관 고유한 특성에 따라 대응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형사사법체계는 범죄증가보다는 다른 사회적 요인, 즉 실업률의 증가와 그에 대한 사회적 불안과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직접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해석은 2000년에 형사범죄의 발생이 다른 년도에 비하여 높게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식기소, 실형선고의 비율은 감소하는 현상을 통해서도 뒷받침한다. 이는 형사사법체계의 활동이 단지 범죄발생에 따라서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회적 요인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시사하며, 이러한 형사사법체계의 활동은 대량실업과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통제하려는 의도였다고 할 수 있다. 즉 형사사법체계는 구속이나 실형선고라는 조치를 통하여 범죄를 감소시키고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예방효과를 위한 형벌을 행사하였다고 할 수 있다.

* 대구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사회학박사

I. 머릿글

경기침체 및 실업과 형사정책이나 교정정책간의 관계는 흥미로운 쟁점 거리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경기침체와 수감현상간의 관계는 국가의 형사정책의 결과로서 주된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 우리 사회는 1970년대 이후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루어왔으나, 지난 1997년 말에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경기침체와 대량실업을 경험한 바 있다. 최근까지도 우리의 경제상황은 크게 호전되지 못하고 있으며, 높은 실업현상은 지속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1990년대 후반의 경기침체와 대량실업이 범죄 및 형벌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는 우리의 주된 관심거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이론적 논의 및 경험적 연구들은 아직도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형벌(punishment, Strafe)은 대체적으로 사회에서 용인되지 않은 특정 행위를 저지른 사람, 또는 특정 법률을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형사제재를 부과하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다. 현대사회에서 형벌권은 국가에 의하여 독점되고 있으며, 이러한 국가의 형벌권 행사는 옹보주의적 입장과 예방주의적 입장에 의하여 정당화되고 있다. 즉 국가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그가 유발한 해악만큼의 정당한 대가를 부과함으로써 사회정의를 실현하거나, 범죄자 자신이나 일반 시민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형벌을 부과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형벌의 의미 및 정당화를 다루는 법학의 규범적 접근과 다르게 사회학적 입장에서는 실제적인 형벌의 사회적 기능이나 효과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는 형벌을 범죄행위에 대한 응보 및 예방적 역할보다는 사회적 통합, 정치적 통제, 그리고 노동통제적 기능을 중심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형벌이 사회 및 시대에 따라 변화양상 및 변화원인 등에 관심을 갖는다.

사회의 경제적 상황과 범죄, 그리고 형벌간의 관계는 범죄학 및 형사정책학의 오랜 쟁점거리였다고 할 수 있다(Box, 1987; Crow, Richardson, Riddington, and Simon, 1989). 일반적으로 경기상황과 형벌간의 관계에 대한 전통적 견해는 경제상황이 좋거나 실업이 적을 경우에는 온건한 형벌정책이 이루어지고, 경기가 나빠거나 실업이 증가할 경우에는 엄중한 사법활

동이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즉 경제상황이 나빠지거나, 실업자가 증가하게 되면, 범죄가 증가하고, 그에 따라 엄한 형벌이 부과되고, 결국 재소자들이 증가할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이는 억제이론에 바탕을 둔 경기침체 및 범죄증가에 따른 형벌강화가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견해와는 다르게 경기침체와 형사사법기관의 활동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다양한 이론들이 제시된 바 있다. 즉 마르크스의 이론에 바탕을 둔 Rusche와 Kirchheimer(1939)의 “형벌의 노동통제 가설”, 뒤르켐의 형벌론에 근거하여 발전된 Blumstein과 Cohen(1973)의 “형벌의 안정성 가설” 등이 대표적이다.

이 연구에서는 경기침체가 범죄 및 형사사법체계의 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경기침체가 형사사법기관의 활동에 영향을 미친다면 그 과정 및 원인은 무엇인지를 탐구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위하여 지난 1998년의 경기침체기간, 이른바 “IMF 외환위기”에 초점을 두고 경기침체와 대량실업이 범죄 및 형사사법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1998년에 경기침체와 대량실업이 나타나자 범죄가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와 더불어 이른바 ‘생계형 범죄’들이 급증하고 이에 대한 형사사법체계의 대응방안들이 사회적 쟁점으로 대두된 경험에 있다. 그러한 상황에 대하여 우리 사회의 형사사법체계가 대량실업과 그에 따른 범죄현상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하고 활동했는지를 밝혀보고자 하는 것이다.

II. 경기침체와 형사사법활동

형벌의 기능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론적 견해들이 제시되고 있다. Beccaria(1963) 등은 형벌을 범죄에 대한 대응으로 파악하였다. 이러한 입장에서 형벌은 범죄행위의 해악의 정도에 따라 형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며, 이러한 형벌은 범죄자 개인이나 일반인의 범죄억제에 기여하는 정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은 형벌의 행사에 있어서 범죄행위 그 자체만을 고려하여 형벌이 이루어져야 하지, 다른 사회경제적 환경을 고려한 형벌행사를 배제하고 있다. 즉 형벌은 범죄에 대한 대

응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억제이론의 입장에서 경기침체 등의 사회적 변화에 의하여 범죄가 증가하면 형벌의 대상이 증가하고 형벌의 정도도 강화되고, 범죄가 감소하면 형벌을 완화한다는 주장이 제안되었다.

또한 Marx(1993)는 국가 및 법을 자본가의 지배의 도구, 잉여노동의 통제도구 등으로 파악한 바 있다. 이러한 이론에 근거하여 Neo-Marxist이론이 제안되었다(Rusche and Kirchheimer, 1939). Neo-Marxist는 형벌을 자본주의체계의 경제적 요구에 의하여 결정된 지배적인 이데올로기를 반영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형벌은 옹호나 억제의 역할을 하기보다는 잉여노동력을 통제하는 경제적 기능을 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경제적으로 잉여노동력이 과잉될 경우에는 구금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통제하고, 구금의 위협을 통하여 잉여노동자를 안정화시키는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Rusche와 Kirchheimer(1939)의 노동통제가설을 통하여 국가는 노동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형벌을 사용하며, 노동력이 부족할 경우에는 형벌을 가볍게 하고, 노동력이 충분할 경우에는 형벌을 엄하게 한다는 것이다.

Durkheim(1893; 1895)은 사회를 유지하고 보호하는 형벌의 사회통합적 기능을 강조하였다. 그에 따르면, 범죄는 사회적으로 정의된 것으로 형벌의 의식(ritual)을 통하여 사회통합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형벌의 기능은 행위자체를 금지하기 위한 것보다는 일정 수준의 형벌 의식을 통하여 사회적 가치 및 집합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형벌은 도덕적 통합을 위한 상징적 욕구에 대한 기능적 반응이고, 범죄는 사회적 형벌의 결과라는 것이다. 그는 이러한 범죄와 형벌의 정상성 및 항상성을 주장한 바 있다. 사회는 형벌을 통하여 일정 정도의 범죄에 대한 처벌을 시도하며, 이러한 형벌의 행사를 통하여 사회규범의 유지와 사회통합을 시도한다. 비록 일시적으로 많은 범죄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처벌은 범죄발생에 비례하여 강화하지 못하며, 범죄가 감소한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대폭 줄일 수는 없다는 것이다. 전자의 경우에는 아주 심각한 행위만에 처벌을 행사하고, 후자의 경우에는 사소한 위반행위까지 형벌을 행사하여 사회에서 행사되는 처벌의 수준은 항상 일정수준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Blumstein은 형벌의 안정성가설(stability of punishment hypothesis)을 제시하며, 형벌은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주장하였다(Blumstein and Cohen, 1973, Blumstein and Moitra, 1979).

1. 억제이론: 형사사법체계의 의사결정가설

억제이론의 기본적인 전제는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자이며, 합리적인 의사결정 및 행위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제를 바탕으로 국가의 신속하고, 확실하며, 엄격한 형벌은 범죄를 억제하고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범죄를 억제하거나 줄이기 위한 형벌강화정책이 도출된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경제상황과 형벌간의 관계에 대한 억제이론적 주장이 제시된다. 즉 경기침체 및 높은 실업상황이 발생하면, 범죄가 증가하고, 이에 대하여 형사사법체계는 형벌을 강화하여, 수감률(*incarceration rate*)을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기침체 및 대량실업과 형벌간의 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경기침체는 범죄발생을 증가시켜 형사사법기관의 정상적인 활동에 의해서 형벌강화현상을 초래한다. 대량실업은 범죄동기의 증가시키고, 실제적인 범죄의 증가는 그에 대한 형벌 강화를 유발하고, 실업자는 더 엄한 형벌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Greenberg, 1977, Jankovic, 1977*). 둘째로 경기침체로 인한 대량실업은 범죄증가 및 도덕적 붕괴에 대한 사회적 두려움을 증가시키며, 이러한 사회의 인지적인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형사사법체계의 구금 등의 형벌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Box, 1987; Box and Hale, 1982*). 이러한 결정들은 일반예방효과를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로 실업률의 증가는 가석방 위원회 등의 교정기관의 조건부 석방, 또는 가석방을 감소시켜 교정기관의 수감자를 증가시킨다는 것이다(*Inverarity and Grattet, 1989*). 넷째로 실업자의 지위는 사회의 전체적인 실업률과는 별도로 판사의 형의 선고과정에서 재범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어 중한 형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Greenberg, 1977; Box and Hale, 1985; Chiricos and Bales, 1991*). 이는 실업자의 지위 그 자체가 실업자의 구금여부에 영향을 미친다는 입장이다. 이와 같이 억제이론에 근거한 견해들은 경찰, 검사, 법관 등의 형사사법기관의 담당자들은 경기침체와 대량실업으로 인한 범죄현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범죄예방과 사회안전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파악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비판적 견해와 경험적 연구결과들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첫째로 실업현상은 범죄동기를 증가시키기도 하지만, 범

죄기회 감소효과를 초래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즉 대량실업은 범죄대상의 감소나 집안활동의 증가로 범죄감시효과가 증가되는 효과를 나타내기도 한다는 것이다(Cohen and Felson, 1979). 또한 경기침체는 국가의 긴축재정정책을 초래하고, 이는 형사사법에 대한 예산감축과 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는 것이다(Michalowski and Pearson, 1990). 또한 경기침체 및 대량실업, 범죄발생 및 형사사법활동간의 관계여부 및 정도를 파악하는 경험적 연구들은 자료수집, 분석방법, 변수 측정 등의 방법론적 문제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에는 아직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Parker and Horwitz, 1986; Inverarity and McCarthy, 1988; Hochstetler and Shover, 1997; Sutton, 2000).

2. 노동통제가설

Rusche와 Kirchheimer는 형벌과 노동통제간의 관계에 대한 이론화를 시도하였다. 그들의 입장에 따르면, 생산양식은 형벌의 형태를 결정하며, 역사적으로 존재하였던 생산양식은 그에 부합하는 고유한 형벌형태를 창출하였다. 즉 “모든 생산체계는 그 생산관계에 적합한 형벌체계를 발전시켰다”(Rusche and Kirchheimer, 1939: 5)는 것이다. 형벌은 범죄를 억제하고 예방하기 위한 사회방어기제도 아니고 법위반에 대응하는 사회적 또는 국가적 반응도 아니다. 형벌은 노동통제, 즉 잉여노동력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다. 그들은 범죄와 형벌에 대한 역사적 변동과정에 관심을 보였다. 그들은 유럽의 생산양식을 고대노예경제(slave economics), 중세 봉건제도(feudalism), 상업자본주의(mercantile capitalism), 산업자본주의(industrial capitalism)로 구분하고, 그에 부합하는 형벌형태를 발전시켰다고 파악하였다. 노예경제에서 주된 형벌형태는 노동을 효과적으로 착취하기 위한 노예형(enslavement), 중세봉건제도에서는 농업중심의 경제체계에서 노동시장이 쇠퇴하였기 때문에 신체형 및 사형제도, 상업자본주의에서는 노동시장이 부활되어 노동력은 하나의 상품으로 등장하였고, 그에 따라 원시적 자본축적에 유용한 노동력의 저장소로서 감화소(workhouse)가 고안되었다. 그러한 시대에서는 구금형이 주된 형벌형태가 되었다. 현대의 산업자본주의에서는 강제된 노동은 더 이상 효과적인 경제적 가치를 지니지 못하기 때문에 형벌

의 주요 형태로서 감화소는 쇠퇴하였고, 벌금형 등으로 대체되었다. 그들은 이러한 변화를 노동력을 통제하는 생산양식의 변화라고 보았다.

이러한 Rusche와 Kirchheimer의 형벌의 노동통제가설을 바탕으로, 최근에 신-마르크스주의자들은 형벌은 범죄에 대한 응보 및 예방적 대응이라는 전통적인 견해를 비판하고, 이데올로기적이며 경제적인 맥락에서 범죄와 형벌을 파악하고 있다. 신-마르크스주의자에게 형벌은 자본주의체계의 경제적 요구에 의하여 결정되는 그 사회의 지배적인 이데올로기의 반영으로 이해된다. 형벌의 지배적인 형태로서 구금형은 응보 및 범죄억제뿐만 아니라 노동력을 통제하는 경제적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자본주의의 잉여노동공급의 적절한 균형을 위하여, 구금형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잉여공급의 비율을 통제하고, 간접적으로 형벌위협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즉 노동공급이 부족한 경우에는 형사사법체계는 가벼운 형벌을 하고, 노동공급이 충분할 경우에는 형벌을 강화하여 잉여노동력을 통제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이는 실업증가는 범죄발생을 증가시키고, 증가된 범죄는 형벌을 강화시킨다는 억제이론적 주장에 대하여 실업증가 그 자체, 즉 잉여노동의 증가는 형벌을 강화시킨다는 견해를 제안하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에 근거하여 많은 경험적 연구들이 시도되었다(Greenberg, 1977; Jan kovic, 1977; Galster and Scaturro, 1985).

3. 형벌의 안전성가설

Durkheim(1893, 1895)은 범죄는 사회적으로 정의된 것으로서 형벌을 통하여 사회통합을 강화하기 위한 결과물로 파악된다. 그에 의하면, 범죄는 사회마다 일정한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으며, 그러한 범죄의 존재는 정상적인 것이다. 범죄는 사회적 집합의식에서 벗어나 행위이며, 사회는 그러한 행위에 대한 비난과 형벌을 통하여 사회의 집합의식을 유지하려고 한다. 형벌은 범죄행위 자체를 금지하기 위한 것보다는 형벌행사를 통하여 사회적 가치 및 집합의식을 공공화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사회에서 너무 많은 형벌이나 경미한 형벌은 집합의식의 강화 및 사회통합에 적절하지 못하다. 그러므로 일정하고 지속적이며 적절한 수준의 형벌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를 바탕으로 Blumstein과 그의 동료들은 형벌의 안정성가설(stability of punishment hypothesis)을 제시하였다(Blumstein and Cohen, 1973, Blumstein and Moitra, 1979). 이러한 형벌의 안정성 가설에 의하면 경기침체 및 대량실업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형벌을 강화될 가능성은 낮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최근에는 조직론적 입장에서 교정기관의 수용력(prison capacity), 즉 입소와 출소의 균형과정(equilibrating process)을 강조하는 견해가 제시된 바 있다. 이러한 입장은 두 견해로 나누어진다. 첫째로 경기침체 및 대량실업은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예산의 감축 또는 비유연성으로 활동의 저하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형사사법 활동은 조직자원의 부족 및 결여로 범죄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저하되며, 단기적인 과부하상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로 형사사법 체계는 사회적 환경(경향)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적 항상성(organizational homeostasis)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수형자의 입소결정과 출소결정을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은 형사사법체계의 인력 및 물적 자원 등의 조절을 통하여 조직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강조한 것이다(Berk, Messinger, Rauma, and Berecothea, 1983).

Ⅲ. 연구설계

이 연구에서는 우리 사회에서 경기침체 및 대량실업이 범죄 및 형사사법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또는 경기침체와 그에 따른 범죄형상에 대하여 형사사법체계가 어떻게 대응하였는가를 경험적 자료를 통하여 살펴보려는 것이다. 경기침체 및 대량실업과 형사사법활동간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견해는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두 현상간의 관계양상 및 직·간접적인 효과여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경기침체는 형벌을 강화할 것인가, 아니면 이전과 같은 수준의 안정된 양상을 보일 것인가? 그리고 그러한 변화는 범죄현상을 매개하여 나타나는 간접적인 효과인가, 아니면 범죄형상과 관계없이 나타나는 직접적인 효과인가가 주된 쟁점거리이다(Arvanites and Asher, 1995). 이러한 이론적 논

의에 바탕을 둔 경험적 연구들도 다양하고 심지어는 상반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경험적 연구가 지니고 있는 자료유형, 변수측정, 분석방법 등의 문제에 기인하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하여 최근에는 특정이론의 검증보다는 형벌, 특히 수감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종합적인 탐색이 시도되고 있다 (Cappell and Sykers, 1991; Jacobs and Helms, 1996; Hochstetler and Shover, 1997; Sutton, 2000).

국내에서도 1990이후의 우리 사회의 범죄추세(최인섭 · 이상용 · 기광도, 1999; 최인섭, 2002), 범죄추세의 분석 및 예측(기광도, 2003), 검찰과 법원의 범죄사건처리추세(박순진 · 이상용, 1999; 윤옥경, 2007), 교정추세 분석(김보환, 2002) 등의 연구가 있었으나, IMF 경제침체의 효과를 분석하지는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경기침체 및 대량실업이 형사사법활동에 미친 효과를 분석하고, 그러한 효과가 범죄현상을 매개로 한 것인지를 밝히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위하여 1990년 이후에 우리 사회에서 나타난 경기침체 및 대량실업, 범죄현상, 그리고 형사사법활동간의 관계를 살펴보기로 한다. 경기침체를 파악하는 지표로는 경제성장률(GDP)과 실업률로 파악하였고, 범죄현상은 전체범죄 및 주요 범죄의 발생률, 형사사법활동은 검찰의 기소, 법원의 양형, 교정기관의 수용현황 등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특히 1990년부터 2005년까지의 시계열자료를 ARIMA모형분석을 통하여 ‘IMF 외환위기’가 경제상황, 범죄발생, 그리고 형사사법에 미친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1. 자료 및 변수의 측정

우리 사회에 1990년대 이후의 경제상황과 범죄발생추세, 그리고 형사사법체계의 활동을 파악하기 위하여 사용된 주요 요인으로서는 경제성장률, 실업률, 전체범죄, 재산범죄, 폭력범죄, 교통범죄의 범죄발생률, 경찰 등의 형사사법체계의 활동양상이다. 이러한 자료들은 공식통계자료이며 1990년부터 2005년까지의 기간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대검찰청, 1991-2006; 법무연수원, 2006; 법원행정처, 2006; 통계청, 2006).

우리 사회의 경제상황은 경제성장률(economic growth rate)과 실업률(unemployment rate), 그리고 지니계수(Gini's coefficient)로 파악하였다.

경제성장률은 1년 동안 각 경제활동부문이 만들어낸 부가가치가 전년에 비하여 얼마나 증가하였는가를 파악하는 지표로서 불변가격에 의한 국내총생산(GDP)의 전년대비 증가율을 의미한다. 그리고 실업률은 만 15세 이상의 경제활동인구에서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로 측정한 지표이다. 지니계수는 소득분배의 불평등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0과 1사이 값을 가지며, 값이 높을수록 그 사회의 불평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0.4를 넘으면 사회의 소득분배가 불평등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한다.

우리 사회의 범죄발생추세는 대검찰청의 「범죄분석」에 보고된 자료를 사용하였다. 이러한 범죄발생추세는 범죄발생률(crime rate), 인구 10만 명당 발생건수로 지수화하여 측정하였다.²⁾ 우리 사회의 범죄지표로서 전체범죄의 경우는 큰 문제가 없다고 할 수도 있지만, 법률의 형식에 따라 형법범죄나 특별법범죄 등의 분류에 의하여 집계된 수치를 그대로 사용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최인섭·박순진, 1993; 이상철·기광도, 1994). 이 연구에서는 범죄유형을 범죄의 내용에 따라 크게 재산범죄, 폭력범죄, 교통범죄로 구분하여 분석하기로 한다(기광도, 2003). 이러한 개념정의의 바탕으로, 재산범죄는 물질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타인의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하는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장물, 손괴, 방화 등으로 측정하였다. 그리고 폭력범죄는 생명 및 신체상의 손상을 초래하는 폭행, 상해, 강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특별법), 살인, 협박, 약취 및 유인, 체포 및 감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처법)로 파악하였으며, 교통범죄는 도로교통에서 발생한 교통질서위반 및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죄, 도로법, 자동차관리법,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파악하였다. 그리고 형사사범활동은 검찰의 기소율 및 구속률, 법원의 자유형비율, 그리고 교정기관의 수감자수, 가석방인원 등으로 파악하였다.

2) 범죄발생률을 구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다. $CR_{ij} = (C_{ij} / P_j) * 100,000$, (i = 범죄유형, j = 특정년도). C_{ij} 는 특정 연도의 특정 범죄유형의 발생건수, P_j 는 특정년도의 인구수이다. 이 연구에서 범죄발생율은 연앙추계인구를 기준으로 계산된 것이다. 연앙추계인구(mid-year estimated population)는 인구주택총조사에 나타난 인구의 중복 및 누락 등을 보완하고, 장래 인구동태율(출생, 사망, 이민 등)을 감안하여 추계한 매년 7월 1일 현재시점의 인구이다.

IV. 분석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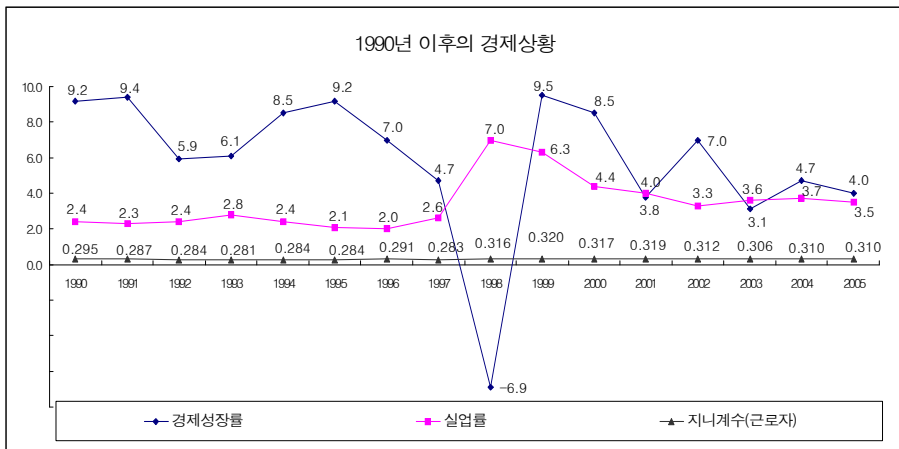
1. 1990년 이후의 경제상황

우리 사회는 1960년대 이후 지속적인 산업화정책을 추진하여 급격한 경제발전을 이룩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97년 후반의 외환위기는 전반적인 경제위기를 초래하였고, 그 결과 경기침체와 대량실업의 상황을 경험하였다. 지난 1990년부터 2000년까지의 우리 사회의 경제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경제성장률과 실업률, 그리고 도시근로자의 지니계수의 변화는 <그림 1>에 제시되어 있다. 경제성장률은 1990년 9.2%에서 1992년에는 5.9%로 감소하였으나 1995년에는 9.2%로 증가였고, 그 이후 다소 감소하여 1997년에는 4.7%, 그리고 외환위기를 겪은 1998년에는 -6.9%로 급격히 감소하였다. 그러나 1999년에는 경제상황이 호전되어 경제성장률은 9.5%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다시 감소하여 2005년에는 4.0%로 나타났다. 그리고 실업률의 경우에는 1990년 2.4에서 1997년 2.6까지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외환위기를 맞은 1998년에는 7.0로 급격히 증가하였고, 그 이후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2005년에 3.5로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의 소득불평등을 나타내는 도시근로자의 지니계수의 경우, 1990년도 0.295에서 1997년 0.283까지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1998년에 0.316으로 증가한 후 2005년까지 비교적 높은 경향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우리 사회의 경제상황은 1990년대 중반까지는 비교적 높은 경제성장과 낮은 실업률을 유지하며 안정적인 발전을 하고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1997년말의 외환위기로 인하여 1998년에는 급격한 경기침체와 높은 실업률을 경험하였다. 그 이후 다시 경제성장률이 회복하고, 실업률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며 안정화되는 것으로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외면적인 경제회복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1998년 이전과는 내용적으로 다른 사회로 변모하고 있다는 것이다. 1998년의 경제위기는 기업의 구조조정을 통하여 안정적인 고용구조보다는 임시적인 계약적 고용구조로 변화를 통하여 비록 고용이 증가되었다고 하더

라고 임시직과 계약직 등의 불안정한 고용이 증가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성장률도 매년 불안정하게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2000년 이후의 불안정한 경제상황은 경제적 불평등을 보여주는 지니계수를 통하여 나타난다. 우리 사회의 지니계수는 경제성장이 다시 회복되고, 실업이 감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사회의 불평등 정도는 다시 낮아지지 않은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림 1> 1990년 이후의 경제상황



* 출처: 통계청(1991-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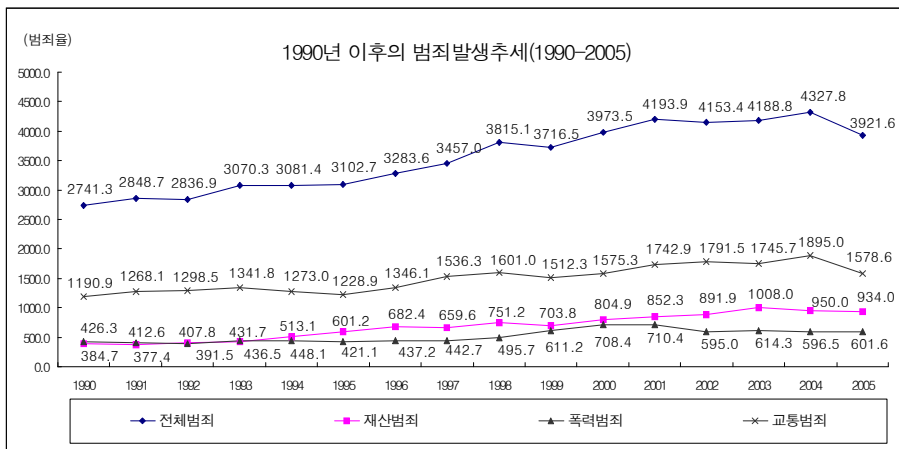
2. 1990년 이후의 범죄발생양상

1990년대의 범죄발생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전체범죄의 발생건수는 1990년에 1,171,380건에서 1998년에 1,765,887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1999년에는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다시 2004년에는 2,080,901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³⁾ 이러한 범죄발생양상을 범죄유형별 인구 100,000명당 발생건수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체범죄의 발생률은 1990년도에는 2741.3건에서 점차 증가하여 1997년에는

3) 1990년대의 범죄발생추세는 최인섭·이상용·기광도(1999), 최인섭(2002), 검찰과 법원의 범죄사건처리에 대한 공식통계자료의 분석은 박순진·이상용(1999), 교정주세분석은 김보환(2002)을 참조하기 바람.

3,457.0건이었으나, 외환위기를 경험한 1998년에는 3815.1건에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후 1999년에 잠시 감소하였으나 다시 2001년에는 3,973.5건에 이르고,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4년에는 4,327.8건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05년에는 3,921.6건으로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 1990년 이후의 범죄발생추세



* 출처: 「범죄분석」(대검찰청, 1991-2006)

이러한 전체범죄를 범죄유형에 따라 구분하여 살펴보면, 먼저 재산범죄의 경우에는 1990년에 384.7건에서 서서히 증가하여 1997년에는 659.6건이었으나, 1998년에는 751.2건에 이르고 1999년에 일시 감소하였으나 다시 증가하여 2003년에는 1,008건에 이르렀으나, 이후 감소하여 2005년에는 934건으로 나타났다. 폭력범죄의 경우에는 1990년에 426.3건에서 1992년에 391.5건으로 감소하였으나 다시 증가하여 1997년에는 442.7건이었으나, 1998년에 495.7건에 이르고 더욱 증가하여 2001년에는 710.4건으로 증가하였다. 그 이후 감소하여 2005년에는 601.6건으로 나타났다. 교통범죄의 경우에는 1990년에는 1,190.9건에서 다소의 변동을 거쳐 1997년에 1,536.3건으로 증가하여 1998년에는 1,601건으로 증가하였다가 일시 감소하였으나 다시 증가하여 2004년에는 1,895.0건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05년에는 1,578건으로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1990년대 이후 범죄유형별 발생양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표

1>에 의하면, 절도범죄의 발생률은 1990년도에 221.7건에서 1994년에는 128.2건으로 감소하였으나, 1997년부터 증가하여 1998년에는 189.8건, 그리고 2005년에는 395.7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도범죄의 경우에는 1990년에는 9.8건에서 1997년 9.3건으로 일정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1998년도에는 11.7건으로 증가하고, 그 이후에도 다소 감소하였으나 다시 2002년부터 증가하여 2003년에는 15.3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후 감소하여 2005년에는 10.9건으로 나타났다. 사기범죄는 1990년에는 100.8건에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98년에는 454.6건이 이르렀고, 그 후에는 다소 감소하였으나 2004년에 증가하여 512.0건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05년에는 421.8건으로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폭행범죄의 경우에는 1990년에는 15.2건에서 다소 감소하여 1997년에는 11.7건이었으나, 1998년에 17.3건으로 급격히 증가한 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5년에는 40.3건에 이르고 있다.

<표 1> 1990년 이후 주요 범죄의 발생추세

연도	전체	재산 범죄	폭력 범죄	교통 범죄	절도	강도	사기	폭 행	상해	폭처법	강간	도교법	교통법
1990	2741.3	384.7	426.3	1190.9	221.7	9.8	100.8	15.2	44.3	349.9	12.9	566.1	572.0
1991	2848.7	377.4	412.6	1268.1	201.2	6.4	118.0	14.2	45.0	337.7	12.0	580.3	578.1
1992	2836.9	407.8	391.5	1298.5	176.2	5.8	166.0	12.8	43.9	318.8	12.5	568.1	579.3
1993	3070.3	431.7	436.5	1341.8	136.9	6.5	221.4	13.3	49.9	353.0	16.0	585.4	578.1
1994	3081.4	513.1	448.1	1273.0	128.2	10.0	296.9	13.4	54.7	359.1	16.6	523.1	565.9
1995	3102.7	601.2	421.1	1228.9	134.8	7.6	378.4	12.1	50.3	341.2	13.7	583.7	514.9
1996	3283.6	682.4	437.2	1346.1	151.2	7.9	441.3	12.2	52.0	353.2	15.7	676.3	538.2
1997	3457.0	659.6	442.7	1536.3	176.3	9.3	396.2	11.7	50.3	360.5	15.5	930.4	492.1
1998	3815.1	751.2	495.7	1601.0	189.8	11.7	454.6	17.3	55.8	400.6	17.0	1024.1	454.1
1999	3716.5	703.8	611.2	1512.3	177.2	10.1	418.7	26.2	66.1	494.3	18.9	833.3	513.0
2000	3973.5	804.9	708.4	1575.3	351.6	11.4	344.6	35.8	70.2	573.9	21.7	868.8	544.6
2001	4193.9	852.3	710.4	1742.9	357.1	11.7	380.9	36.4	68.8	574.9	22.2	1061.3	495.1
2002	4153.4	891.9	585.0	1791.5	376.4	12.5	411.5	33.8	61.7	472.0	19.8	1179.1	443.9
2003	4188.8	1008.0	614.3	1745.7	392.6	15.3	502.3	39.1	64.7	480.8	21.7	1159.2	444.4
2004	4327.8	950.0	596.5	1895.0	322.1	12.0	512.0	36.2	66.3	460.8	23.1	1292.8	438.4
2005	3921.6	934.0	601.6	1578.6	395.7	10.9	421.8	40.3	64.7	463.0	24.3	1005.0	403.9

* 출처: 「범죄분석」(대검찰청, 1991-2006)

상해범죄는 1990년에 44.3건에서 1997년에 50.3건, 그리고 1998년에는 55.8건, 2005년에는 64.7건으로 나타났다. 폭처법범죄의 경우에는 1990년에

349.9건에서 1997년 360.5건으로 일정수준을 유지하였으나 1998년에 400.6건으로 증가한 후 계속 증가하여 2001년에는 574.9건에 이르렀고, 그 이후 다소 감소하고 있다. 강간범죄(성폭력특별법 포함)의 경우에는 1990년에 12.9건에서 큰 변화없이 일정수준을 유지하였으나 1998년에 17.0건으로 다소 증가한 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5년에는 24.3건에 이르고 있다. 교통질서범죄를 반영하는 도로교통법위반사건은 1990년에 566.1건에서 1996년에는 676.3건으로 다소 증가하였으나, 1997년에 930.4건으로 급격히 증가하여 1998년에는 1,024.1건에 달하였다가 이후 다시 감소하였으나, 다시 증가하여 2004년에는 1,292.8건에 이르렀다. 그러나 2005년에는 1,005건으로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사고범죄를 나타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사건은 1990년에는 572.0건에서 일정수준을 유지하다가 1995년 514.9건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여 1998년도에는 454.1건으로 감소하였고, 그 후에는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다시 감소하여 2005년에는 403.9건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이 대체적으로 범죄발생양상은 외환위기로 인한 경기침체와 대량실업이 발생한 1998년 전후로 기점으로 급격한 변화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다음해인 1999년에는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2000년 이후에도 지속적인 경향을 보인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범죄유형에 따라 1998년 전후의 범죄발생양상의 변화가 다르게 나타나는데, 절도와 강도, 폭행, 강간범죄는 1998년에 급격히 증가하여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하여 사기범죄와 교통질서위반은 1998년과 1999년에 다소 증가하였다가 그 이후에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준다. 또한 상해, 폭처법위반범죄는 1998년에 다소 증가한 후 2002년까지 증가하였다가 최근에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리고 교통사고범죄는 오히려 1999년에 감소하였다가 이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3. 1990년 이후 형사사법활동

1) 검찰의 기소현황

검찰은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이나 직접 인지 등으로 수사한 사건에 대하여 피의자가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소제기 즉 기

소할 수 있다. 그러나 검찰이 사건을 수사한 결과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데 이를 불기소처분이라 한다. 검찰은 피의자에 대하여 징역형이나 금고형에 처하는 것보다 벌금형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기소와 동시에 법원에 대하여 벌금형에 처해달라는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약식기소(구약식)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사기록만으로 재판을 하게 된다. 이에 비하여 징역형이나 금고형에 처해야 할 경우라고 생각되는 경우 검찰은 공판절차에 의한 재판을 청구하는데 이를 정식기소라고 한다. 또한 범죄의 혐의가 있고 죄질이 나쁘며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구속할 수 있다. 이러한 검찰의 활동에서 구속이나 정식기소의 양상을 통하여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경향을 살펴볼 수 있다. 대체적으로 구속사건이 증가하거나 정식기소가 많을 경우에는 처벌을 강화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1990년대 검찰의 형사사법활동을 기소 및 구속현황을 통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990년도의 검찰의 처리인원은 1,426,189명이며, 그 가운데 기소인원은 718,911명(50.4%), 불기소 692,923명(48.6%)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검찰의 처리인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99년에는 2,306,824명에 달하였다가 일시 감소한 후 2005년에는 1,965,571명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처리인원 가운데 기소현황을 살펴보면, 1990년의 기소율은 50.4%에서 1997년에 52.4%로 일정수준을 유지하였으나, 1998년에는 54.1%로 다소 증가하였고, 1999년에는 일시적으로 감소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기소인원 중에서 정식기소의 경우는 전체 처리인원 가운데 1990년에는 9.4%에서 1997년에는 7.6%로 감소하였다가 1998년에는 8.5%로 일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후에는 감소하여 2005년에는 5.3%로 나타났다. 그리고 구속사건의 경우도 1990년에 전체 처리사건 중에서 7.0%를 차지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감소하여 1997년에는 4.7%로 나타났으나, 1998년에는 5.3%로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구속인원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3년에는 2.3%로 나타났다. 이에 비하여 약식기소인원은 1990년에 전체처리인원의 41.0%에서 1996년에 40.5%로 일정수준을 유지하였으나, 1997년부터 증가하여 1998년에는 46.0%로 나타났다. 그 이후 1999년에는 일시 감소하였으나 이후 증가하여 2004년에는

50.0%에 이르렀다. 그러나 2005년에는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1990년 이후의 기소현황

연 도	처리인원	기소인원	구공판		구 속	불기소인원
			구약식			
1990	1,426,189	718,911 (50.4)	134,603 (9.4)	100,180 (7.0)	584,308 (41.0)	692,923 (48.6)
1991	1,563,514	822,092 (52.6)	142,522 (9.1)	101,228 (6.5)	679,570 (43.5)	730,234 (46.7)
1992	1,579,797	822,494 (52.1)	138,739 (8.8)	91,197 (5.8)	683,755 (43.3)	740,705 (46.9)
1993	1,859,987	946,845 (50.9)	147,253 (7.9)	117,875 (6.3)	799,592 (43.0)	856,104 (46.0)
1994	1,825,039	888,942 (48.7)	134,299 (7.4)	103,684 (5.7)	754,643 (41.3)	878,460 (48.1)
1995	1,891,823	906,330 (47.9)	147,704 (7.8)	112,020 (5.9)	758,626 (40.1)	931,967 (49.3)
1996	2,017,354	973,843 (48.3)	156,804 (7.8)	113,346 (5.6)	817,039 (40.5)	986,522 (48.9)
1997	2,110,436	1,104,911 (52.4)	159,482 (7.6)	99,687 (4.7)	945,422 (44.8)	943,385 (44.7)
1998	2,196,565	1,196,363 (54.5)	185,662 (8.5)	116,287 (5.3)	1,010,701 (46.0)	977,944 (44.5)
1999	2,306,824	1,194,863 (51.8)	165,210 (7.2)	96,436 (4.2)	1,029,653 (44.6)	1,084,189 (47.0)
2000	2,241,635	1,200,986 (53.6)	158,164 (7.1)	91,933 (4.1)	1,042,822 (46.5)	1,009,706 (45.0)
2001	2,321,580	1,306,204 (56.3)	156,657 (6.7)	93,030 (4.0)	1,149,547 (49.5)	986,780 (42.5)
2002	2,297,030	1,333,682 (58.1)	163,060 (7.1)	89,165 (3.9)	1,170,622 (51.0)	938,640 (40.9)
2003	2,296,945	1,288,885 (56.1)	154,530 (6.7)	83,160 (3.6)	1,134,355 (49.4)	984,136 (42.8)
2004	2,284,095	1,272,709 (55.7)	130,851 (5.7)	63,650 (2.8)	1,141,858 (50.0)	778,763 (34.1)
2005	1,965,571	1,021,230 (51.9)	103,948 (5.3)	46,126 (2.3)	917,282 (46.7)	744,661 (37.9)

* 출처: 「범죄분석」(대검찰청, 1991-2001)

** 「범죄분석」(대검찰청)에서는 2003년까지는 불기소에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공소보류를 포함하였으나, 이후에는 제외하고 있음.

이러한 검찰의 기소 및 구속현황은 1998년을 전후로 어느 정도 변화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를 살펴보면, 검찰의 처리인원은 1999년에 크게 증가하였고, 그 이후에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이는 범죄발생사건의 증가로 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검찰의 처리내용의 경우, 1998년에 기소율이 다소 증가한 후 이후에도 계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정식기소인원 및 구속인원의 비율은 1998년에 일시적으로 증가한 후에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데 비하여, 약식기소의 비율은 1998년을 기점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이는 검찰의 사건처리에서 1998년을 기점으로 재판에 회부하는 비율은 증가하였지만, 정식재판의 청구나 구속인원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에 비하여 약식재판의 청구비율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검찰의 사건처리가 1998년 당시에는 엄중한 처벌의 양상을 보였으나, 이후에는 다소 완화된

처벌로 나아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기소비율은 늘었으나 정식 기소는 줄고, 약식재판의 비율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2. 법원의 양형현황

다음은 법원의 범죄사건 처리현황을 살펴보기로 한다. <표 4>는 1990년 이후 법원의 1심 형사공판사건 처리현황을 보여준다. 법원의 공판사건 처리인원을 살펴보면, 1990년에 137,621명에서 1997년까지 일정수준을 유지하였다고 할 수 있는데, 1998년에는 201,581명으로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후 다소 감소하였다가 다시 증가하여 2005년에는 216,460명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처리양상을 살펴보면, 벌금형을 선고한 경우는 1990년에 전체 처리인원 137,621명에서 20,828명으로 15.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벌금형의 비율은 다소 증감은 있었으나 1998년까지는 15%정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999년부터 벌금형의 비율이 16.8%로 증가하였고, 그 이후 계속 증가하여 2005년에는 37.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하여 자유형의 경우에는 1990년에는 100,526명으로 73%를 차지하였고, 이후 감소하였다가 점차 증가하여 1998년에 73.5로 다소 높게 나타났다가 2001년 이후 감소하여 2005년에는 52.8%로 나타났다. 이러한 자유형 중에서 집행유예와 실형을 구분하여 살펴보면, 집행유예의 경우는 1990년에 66,601명(48.4%)에서 1996년까지 일정 수준을 유지하다가, 1997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여 2005년에는 33.6%로 나타났다. 이에 비하여 실형의 경우에는 1990년에 전체 처리인원의 24.7%에서 1996년까지 일정 수준을 유지하다가, 1997년에 27.1%로 증가하여 1999년에 28%로 증가하였다가 이후 감소하여 2005년에는 18.9%로 나타났다. 사형 선고의 경우에는 1990년 이후 감소하는 경향에서 1999년과 2000년에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법원의 형사공판사건 1심 재판결과는 1998년을 전후로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1998년에는 법원의 처리인원이 이 전보다 20%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범죄의 증가와 정식기소의 증가로 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법원의 처리내용의 경우, 1998년부

터는 자유형보다 재산형의 선고의 비율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비록 선고 비율의 경우에는 이전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자유형의 선고인원의 경우에는 1997년보다 1998년도에 선고된 인원은 20%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자유형 선고에서 나타난 변화는 1997년과 1998년도의 실행선고를 받은 비율이 증가하였다는 것이다.

<표 3> 1990년 이후 법원의 형사공판사건 1심 재판현황

연 도	처리인원	벌금형	자유형	집행유예		사 형
				집행유예	실행	
1990	137,621	20,828 (15.1)	100,526 (73.0)	66,601 (48.3)	33,925 (24.7)	36
1991	154,829	24,650 (15.9)	112,727 (72.8)	76,241 (49.2)	36,486 (23.6)	35
1992	147,065	25,296 (17.2)	104,980 (71.4)	70,824 (48.2)	34,156 (23.2)	26
1993	162,598	25,393 (15.6)	116,941 (71.9)	78,056 (48.0)	38,885 (23.9)	21
1994	145,961	22,319 (15.3)	105,257 (72.1)	70,445 (48.3)	34,812 (23.9)	35
1995	158,724	23,035 (14.5)	115,809 (73.0)	76,883 (48.4)	38,926 (24.5)	19
1996	172,758	24,945 (14.4)	124,273 (71.9)	83,197 (48.2)	41,076 (23.8)	23
1997	169,079	25,418 (15.0)	124,003 (73.3)	78,263 (46.3)	45,740 (27.1)	10
1998	201,581	31,224 (15.5)	148,066 (73.5)	93,247 (46.3)	54,819 (27.2)	14
1999	195,585	32,818 (16.8)	143,145 (73.2)	88,451 (45.2)	54,694 (28.0)	20
2000	192,410	34,657 (18.0)	138,443 (72.0)	87,759 (45.6)	50,684 (26.3)	20
2001	200,501	44,150 (22.0)	138,242 (68.9)	87,374 (43.6)	50,868 (25.4)	12
2002	209,891	53,017 (25.3)	136,246 (64.9)	85,659 (40.8)	50,587 (24.1)	7
2003	213,351	61,232 (28.7)	132,204 (62.0)	82,338 (38.6)	49,866 (23.4)	5
2004	237,070	76,731 (32.4)	132,877 (56.0)	83,937 (35.4)	48,940 (20.6)	8
2005	216,460	80,893 (37.4)	114,289 (52.8)	72,659 (33.6)	41,640 (18.9)	6

* 출처: 「사법연감」(법원행정처, 1991-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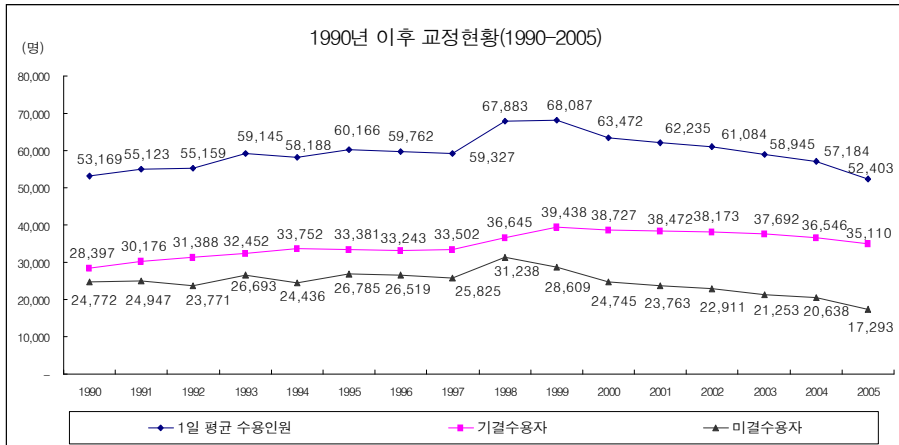
3. 교정현황

다음은 1990년대 교정현황을 살펴보기로 한다. <그림 3>은 1990년대 교정시설 수용현황을 보여준다. 수용자는 기결수용자와 미결수용자로 분류되며, 기결수용자는 형이 확정된 수형자와 노역장 유치형을 받은 노역수, 미결수용자는 피의자와 피고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1990년의 1일 평균 수용인원은 53,169명에서 1997년에는 59,327명까지 조금씩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1998년에는 급격히 증가하여 67,883명, 1999년에는 68,087명에 달하였다. 그 후 감소하여 2005년에는 52,403명으로 나타났다. 이를 인구 100,000명당 수용인원, 즉 수용률로 전환하여 살펴보면, 1990년에는 124명

에서 다소 증가하여 1997년에는 129.1명이었으나, 1998년에는 146.7명으로 급격히 증가하였고, 1999년에는 146.1명에서 감소하기 시작하여 2005년에는 108.5명으로 1998년에 비하여 현저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결수용자의 경우는 1990년에 28,397명에서 매년 조금씩 증가하였으나 역시 1998년에는 급격히 증가하여 36,645명, 1999년에는 39,438명에 이르고 있다. 이후에 다소 감소하였지만 2005년에 35,110명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기결구금자 중에서 수형자는 1990년에 28,267명에서 1998년에는 35,125명, 1999년에는 38,324명으로 증가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점차 감소하여 2005년에는 32,933명으로 나타났다. 노역장 유치자는 1997년에 379명에서 1998년에는 1,520명으로 현저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노역장 유치자는 2005년에 2,177명에 이르고 있다. 이는 1998년 이후 벌금 미납자에 대한 형집행이 강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3> 1990년 이후의 수용자현황



* 출처: 「범죄백서」(법무연수원, 2006)

** 피보호감호자 및 노역장유치자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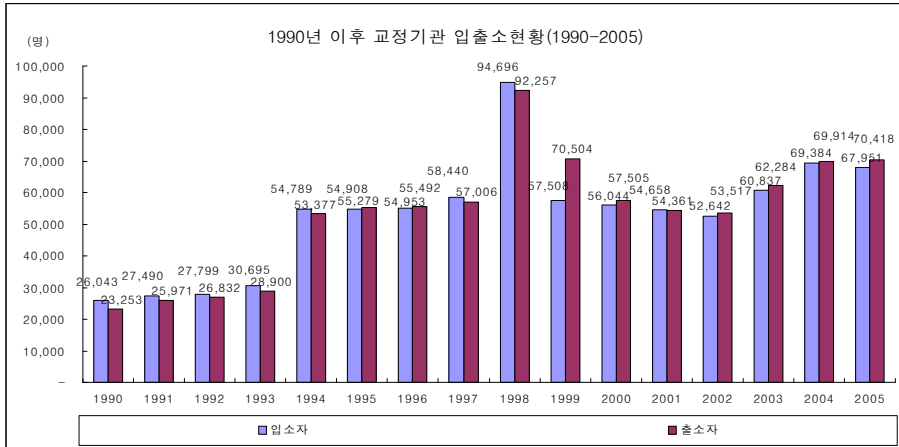
미결수용자의 경우에는 1990년에 24,772명에서 1997년 25,825명까지는 커다란 변화가 없었다고 할 수 있으나, 1998년에는 31,238명으로 증가한 후, 이후 감소하여 2004년에 17,293명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미결수용자의 중에서 수사단계에 있는 피의자는 1990년에 3,015명에서 1997년에는 2,253

명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1998년에는 2,930명으로 일시 증가하였지만 이후 감소하여 2005년에는 1,341명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피고인의 경우에는 1990년에 21,757명에서 일정수준을 유지하다가, 1998년에는 28,308명으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그 후 감소하여 2004년에는 15,952명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1998년 이후 미결수용자와 기결수용자의 변화는 구속 및 실형인원의 변화에 의하여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즉 1998년에 미결수용자의 급격한 증가는 구속인원의 증가에 인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기결수용자의 증가는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하는 비율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은 수형자의 입소 및 출소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수형자의 입소는 직입소와 형 확정 등으로 이루어지며, 출소는 형기종료, 가석방, 사면, 노역종료 등으로 이루어진다. 수형자의 입소사유 중에서 직입소는 군교도소나 경찰서 등에서 이미 형이 확정된 상태로 이입된 경우이고, 형 확정은 구치소나 교도소에서 미결 구금되어 있던 중형이 확정되었거나 보호감호집행 중 가출옥된 후 보호관찰중인 자가 준수사항 등을 위반하여 사회보호위원회로부터 취소결정으로 입소한 경우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수형자의 입소 및 출소현황을 살펴보는 것은 교정기관이 외부의 영향, 즉 구속 및 실형의 증가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하였는지를 살펴보려는 것이다. 특히 형사사법체제로서의 교정기관이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통하여 조직의 수용력의 균형을 유지하려고 하였는지를 살펴보려는 것이다. 입소는 교정기관의 권한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환경적 요인이지만, 출소는 교정기관의 내부적인 의사결정에 의하여 어느 정도는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1990년도에 입소된 수형자는 26,043명이고, 그 가운데 형확정으로 입소한 인원은 22,095명, 직입소자는 3,943명, 기타 249명으로 나타났다. 그 이후 1994년에는 54,789명으로 급격히 증가하였고, 다시 1998년에 94,696명으로 현저하게 증가하였다. 특히 1998년의 경우 형확정자 31,598명, 직입소자 32,721명, 기타 30,337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직입소자의 경우에는 1996년에 9,899명에 비하면 약 3배 정도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1998년의 양상은 이후 점차 줄어드는 경향을 보여준다. 2005년 입소자는 67,951명, 그 가운데 직입소는 35,700명, 형확정은 27,458명, 기타 4,793명으로 나타났다.

<그림 4> 1990년 이후의 수형자 입출소 현황



* 출처: 「범죄백서」(법무연수원, 2006)

** 피보호감호자 및 노역장유치자 포함

이에 비하여 출소자의 경우, 1990년에 23,253명으로 형기종료 14,439명, 가석방 5,539명, 형집행정지 124명, 노역종료 2,010명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출소자 현황은 입소자와 유사한 수준에서 비례적으로 변동하는 것을 알 수 있다. 1998년의 입소자 94,696명에 비하여 출소자도 92,257명으로 입소자보다 출소자가 다소 많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1999년의 경우에는 입소자보다 출소자가 현저하게 많은 양상을 보여준다. 1999년도에 출소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출소자 70,504명 가운데 형기종료 24,242명, 가석방 9,543명, 형집행정지 1,120명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출소자 중에서 가석방의 수가 이전보다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1997년 3,005명, 1998년 6,012명). 또한 1998년의 경우 출소자 중에서 형집행정지가 2,115명으로 1997년의 280명에 비하여 현저하게 증가한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2000년에는 입소자 56,044명, 출소자 57,505명으로 다시 예전의 상황으로 복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교정기관이 하나의 유기체처럼 외부의 변화에 대하여 조직의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변화한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다. 즉 외부의 변화로써 경기침체와 대량실업은 범죄를 증가시켰고, 그에 따른 검찰이나 법원의 중형주의적 처벌로 인하여 교정기관으로 유입되는 인원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표 4> 1990년 이후 수형자의 입소현황

연 도	연도말 입소자			출소자							형집행 정 지	노 역 종 료	기타
	수형자	직입소	형확정	기 타	형종료	가석방	사 면						
1990	29,013	26,043	3,934	22,095	14	23,253	14,439	5,539	0	124	2,010	1,141	
1991	30,532	27,490	4,240	23,001	249	25,971	15,636	6,479	619	134	1,872	1,231	
1992	31,499	27,799	5,136	21,693	970	26,832	14,074	8,286	2	152	3,206	1,112	
1993	33,294	30,695	6,105	23,128	1,462	28,900	14,310	6,151	1,053	206	5,604	1,576	
1994	33,706	54,789	9,331	22,745	22,713	53,377	17,309	4,129	0	137	3,453	28,349	
1995	33,335	54,908	9,449	22,680	22,779	55,279	19,344	3,270	1,280	179	4,364	26,842	
1996	32,939	54,953	9,899	23,639	21,415	55,492	19,848	3,949	1	214	7,853	23,627	
1997	34,373	58,440	13,173	24,650	20,617	57,006	16,712	3,005	17	280	11,762	25,230	
1998	36,811	94,696	32,721	31,598	30,337	92,257	22,815	5,443	1,327	2,115	28,952	31,605	
1999	38,737	57,508	22,957	33,818	733	70,504	24,242	9,543	6	1,120	4,905	30,605	
2000	38,224	56,044	26,764	28,601	679	57,505	18,805	8,890	1,270	672	7,993	18,875	
2001	38,521	54,658	23,511	30,457	690	54,361	20,355	10,008	0	901	8,374	14,643	
2002	37,646	52,642	21,170	30,939	533	53,517	20,452	10,101	52	1,238	6,234	16,440	
2003	37,962	60,837	26,826	32,350	1,661	62,284	19,173	10,113	975	3,359	11,073	17,591	
2004	35,627	69,384	34,826	30,639	3,921	69,914	20,274	11,218	0	4,245	11,098	23,279	
2005	32,969	67,951	35,700	27,458	4,793	70,418	18,649	10,520	1,042	458	14,716	32,969	

* 출처: 「범죄백서」(법무연수원, 2006)

이에 대하여 교정기관은 수형능력의 적정화를 위하여 가석방등을 늘린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결과는 1998년의 경기침체와 대량실업으로 인한 범죄증가와 엄중한 형벌정책으로 인하여 구속 및 자유형의 선고가 강화되어 교정시설에 수용된 인원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미결수용자가 증가한 것은 범죄수사과정에서 구속된 인원이 증가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며, 기결수형자가 증가한 것은 자유형이 확정된 인원 및 노역장 유치형을 받은 인원이 증가하였다는 것을 뜻한다. 이와 같이 형벌의 강화로 인하여 수용기관의 입소자가 증가하였지만 이와 비례하여 출소자도 증가하였다는 것이다. 1998년까지는 수용기관의 입소자가 출소자보다 많았지만 1999년부터는 입소자보다 출소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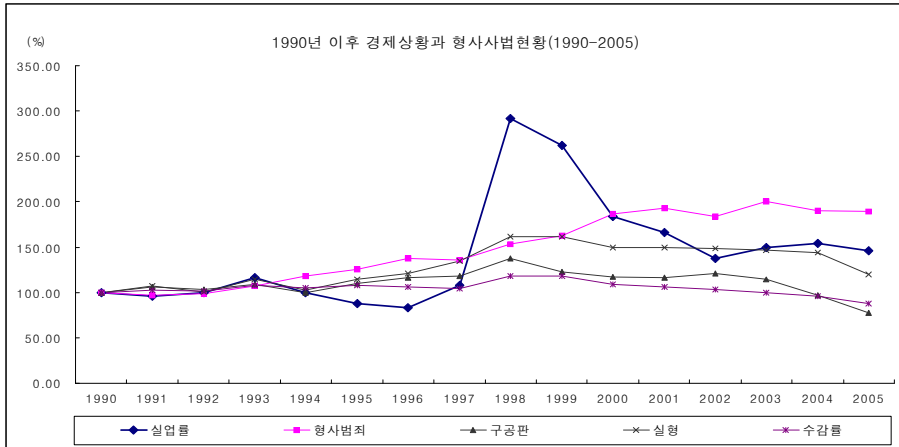
엄중한 형벌정책으로 인한 과밀한 교정기관의 수용력을 회복하기 위한 교정기관의 입·출소의 균형작용의 결과로 보인다.

4. 경기침체가 형사사법활동에 미친 효과분석

지금까지 1990년대 이후 우리 사회의 경제상황과 발생양상, 그리고 형사사법활동의 변화과정을 개별적으로 살펴보았다. 다음은 1997년 후반의 IMF 외환위기로 인한 경기침체와 대량실업이 범죄발생, 그리고 형사사법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러한 IMF 외환위기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1990년도 기준의 도표와 시계열분석(time series analysis)을 시도하였다.

<그림 5>는 1990년도의 값을 100으로 표준화 한 후 실업률, 형사범죄, 구공판, 실형, 수감률 지수들의 변화추세를 살펴본 것이다. 형사범죄는 앞에서 살펴본 재산범죄와 폭력범죄의 합으로 파악하였다. 이러한 지수의 변화를 통하여 경제상황, 범죄발생, 그리고 형사사법활동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1990년대 초에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실업률, 범죄, 그리고 형사사법활동들에 있어서 뚜렷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994년부터 약간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는데, 실업률은 감소하는데 비하여 형사범죄는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일상적인 기대와는 다르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형사범죄의 증가와 더불어 정식기소도 증가하고, 실형의 선고도 증가하며, 수감율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이러한 경향은 1998년도에 현저하게 나타났다. 1998년에는 실업률이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그에 따라 형사범죄도 증가하였지만 증가의 폭은 크지 않다. 그러나 형사범죄의 증가보다 형사사법활동에서의 변화가 더 현저하게 나타났다. 즉 1998년에는 형사사법활동에서 정식기소의 증가, 실형선고의 증가, 그리고 수감률의 증가가 다른 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실업의 증가현상 때문인지 또는 형사범죄의 증가 때문인지 알 수는 없다. 그리고 이러한 형사사법체계의 중형주의적 조치의 결과인지는 모르지만 1999년의 형사범죄는 크게 증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00년 이후의 실업률, 형사범죄, 그리고 형사사법활동간에는 이전과는 다른 변화를 보여준다.

<그림 5> 1990년 이후 실업률과 형사사법활동



* 출처: 통계청(1991-2006), 대검찰청(1991-2006), 법원행정처(1991-2006).

<그림 5>는 1990년 이후 우리사회에서 나타난 경제상황, 범죄발생, 그리고 형사사법활동에 대한 변화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지만, IMF 외환위기가 어느 정도의 효과를 미쳤는지에 대한 정확한 파악에는 다소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럼으로 시계열분석을 통하여 ‘IMF 외환위기’가 경제양상과 범죄발생, 그리고 형사사법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표 5>는 1997년의 경제위기가 실업률과 형사사법형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시계열분석결과를 보여준다. 시계열분석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관찰된 자료이며, 이러한 자료는 과거의 값이 현재와 미래의 값과 관련이 있다는 전제에서 분석을 시도한다. 일반회귀모형에서는 관찰값간의 자기상관과 잔차의 독립성을 전제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시계열자료를 분석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 시계열분석은 이러한 회귀분석상의 전제의 문제를 해결하는 분석이라고 할 수 있다. 시계열자료를 분석하는 가장 일반적인 Box-Jenkins의 시계열 모형화 방식에서는 모형의 식별(model identification), 모형의 추정(model parameter estimation), 그리고 모형의 적합성 진단(model diagnostic checking)의 과정이 활용되고 있다(김연형, 1994; 신기일, 2002). 이 연구에서 시계열자료의 분석은 자기회귀누적이동평균모형(ARIMA: Autoregressive integrated

moving average model)을 이용하였다. 먼저 시계열자료를 분석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 시계열자료의 정상성(stationary)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로그변환과 차분(differencing)을 실시하여 원자료의 1차 차분자료에서 정상성을 확보하였다. 다음은 정상 시계열자료의 자기상관함수(ACF: autocorrelation function)와 부분자기상관함수(PACF: partial autocorrelation function)의 형태를 통하여 차수를 정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선정된 분석모형은 ARIMA(1, 1, 0)모형이며, 모수의 추정에는 최우추정법(Maximum Likelihood)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IMF 외환위기의 효과를 단기와 장기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1998년과 1999년은 가변인(dummy variable)으로 전환하여 분석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분석한 ARIMA(1, 1, 0)모형분석결과는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표 5> IMF 외환위기의 효과에 대한 시계열분석결과

구 분	실업률	형사범죄	구공판	실 형	수감율
AR(1)	.327	.088	.491	-.368	.213
1998	.768***	.022	.149*	.167*	.113**
1999	.475***	-.035	.036	.123	.091*
상수	.021	.041*	-.025	.014	-.001
AIC	-9.93	-34.406	-24.997	-25.219	-49.912
SBC	-7.10	-31.574	-22.165	-22.387	-47.079

*: $p < 0.05$, **: $p < 0.01$, ***: $p < 0.001$

1990년 이후 우리 사회의 경제상황 및 형사사법활동에서 IMF 경기침체의 영향을 살펴볼 수 있다. <그림 5>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실업률은 1998년과 1999년에 급격히 증가하였다가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형사사법활동에서도 유사한 양상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1998년의 변화가 1990년 이후의 지속적인 흐름에서 벗어난 것이었는가를 밝혀야 한다. <표 5>에 의하면, 1998년과 1999년의 일상적인 변화과정에서 현저하게 벗어난 것임을 보여준다. 1998년의 실업률은 일상적인 흐름에서 .768, 1999년에는 .475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하여 형사범죄는 1998년과 1999년에 일상적인 변화추세와 비교하여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997년의 IMF 외환위기는 형사범죄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검찰의 구

공판사건은 1998년에는 .149정도로 일상적인 흐름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으나, 1999년에는 일상적인 흐름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법원에서의 실형선고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는 검찰과 법원의 형사사법활동의 경우에는 1998년에만 IMF 외환위기에 반응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정상적인 수준으로 회귀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교정기관의 수감율의 경우에는 1998년과 1999년 모두 일상적인 흐름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1998년에 높게 나타났다가 1999년에는 감소하였으며 이후 일상적인 수준으로 회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와 <표 5>에 나타난 실업률과 범죄발생, 그리고 형사사법활동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2000년 이후 실업률은 감소하는데 형사범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실업률이 범죄발생의 유일한 원인이 아니며, 명목적인 실업률의 감소보다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실질적인 고용수준의 저하와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 등을 고려하면 이해될 수 있는 현상이다. 둘째로 형사범죄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형사사법체계의 정식기소, 실형, 그리고 수감율은 감소양상을 보인다는 것이다. 이는 형사사법활동이 단지 범죄발생에 따라 대응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1998년 이후 실업률과 형사사법체계의 활동간에는 변화의 크기는 다르더라도 형태는 매우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형사사법체계가 범죄증가보다는 다른 사회적 요인, 즉 실업률의 증가와 그에 대한 사회적 불안과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직접적으로 대응한 것이라는 해석을 낳게 한다. 이러한 해석은 2000년에 형사범죄의 발생이 다른 년도에 비하여 높게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식기소, 실형선고의 비율은 감소하는 현상을 통해서도 뒷받침한다. 이는 형사사법체계의 활동이 단지 범죄발생에 따라서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회적 요인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시사하며, 이러한 형사사법체계의 활동은 대량실업과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통제하려는 의도였다고 할 수 있다. 즉 형사사법체계는 구속이나 실형선고라는 조치를 통하여 범죄를 감소시키고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예방효과를 위한 형벌을 행사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분명하게 나타난 것은 형사사법체계의 활동은 범죄현상에 대하여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점이다. 비록 위의 분석이 범

죄의 질적 측면을 고려하지 못한 한계는 있지만, 범죄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를 감소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형벌을 강화한다는 억제이론적 주장은 경험적으로 지지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IV. 맺음글

우리 사회는 1970년대 이후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낮은 실업률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1998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급작스러운 경기침체 및 대량실업을 경험하였다. 1998년도의 경제성장률은 -6.7%, 실업률은 6.8%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제위기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측면에서의 위기보다는 외환금융의 부족으로 인한 금융상의 위기였기 때문에 비교적 빠른 시간에 극복되었다. 1999년 이후 경제성장률은 회복되고 실업률은 낮아지고 있지만, 실질적인 고용의 질적 수준은 낮아진 상황이며 사회적 불평등은 심화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1990년대 우리 사회의 경제상황, 범죄현상 및 형사사법활동간의 관계를 살펴보려는 것이었다.

1998년의 경기침체는 기업의 구조조정과 그에 따른 대량실업으로 인하여 사회경제적 영역에서 충격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언론 등에 나타난 범죄사건에 대한 보도 등은 시민들에게 범죄에 대한 우려와 두려움을 안겨주었으며, 그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요구되었다. 그러나 1998년의 경우 전반적인 측면에서 범죄증가는 사회적 우려에 비하여 현저하게 증가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범죄유형에 다소 다양한 변화양상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기침체와 대량실업시기의 형사사법활동의 양상을 살펴보면, 먼저 검찰활동의 경우, 사건처리에서 기소건수는 1998년도에 다소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고, 기소사건 중에서 구공판 사건 및 구속 건수는 1998년도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검찰의 사건처리과정에서 경기침체기간에 비교적 강한 형벌을 집행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법원의 판결에서도 1998년도에는 자유형 선고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실형건수도 이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정활동에서도 1998년도의 수감인원이 급격히 증가하

였으며, 1999년에는 더욱 증가하였다가 2000년부터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8년도의 이러한 수감자의 증가는 미결구금자의 증가로 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교정기관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반영하는 가석방으로 인한 출소는 1999년도에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1998년도의 수감인원의 증가로 인하여, 1999년도에는 가석방을 통하여 적정 수용인원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결과를 정리하면, 우리 사회에서는 1998년도의 경기침체로 인하여 실제로 범죄가 증가하기도 하였고, 범죄증가에 대한 우려도 고조되었으며, 이에 대응하여 형사사법기관은 기관 고유한 특성에 따라 대응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경찰의 검거활동이 강화되었고, 검찰의 구속수사 및 기소는 증가되었으며, 법원에서 실형선고비율은 높아졌다. 그 결과 교정시설의 수용인원은 구속수사에 의한 미결수의 증가, 실형선고에 의한 기결수의 증가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는 1998년과 1999년에 시설내 과밀 수용의 현상을 초래하였다. 그렇다고 시설을 확대하여 수용인원을 증가시키기 위한 교정예산은 증액되지 못했다. 결국 현실적으로 교정기관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가석방을 늘리는 것이었다. 그 결과 2000년에는 높은 범죄발생률에도 불구하고 교정인원은 1999년보다 감소하게 되었다.

연구 결과는 우리 사회에서 경제상황, 범죄발생, 그리고 형사사법활동에 대한 몇 가지 견해를 추론할 수 있게 한다. 첫째로 우리 사회에서 1998년에 경험한 경기침체와 대량실업은 그 해 범죄발생을 증가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98년의 범죄증가는 우리 사회의 자연적 증가경향에 비추어보아 급격한 증가라고 평가할 수는 없는 수준이다. 또한 1999년 이후 경제상황이 회복되고 실업률이 감소에도 불구하고 범죄는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을 고려하면 범죄증가의 원인을 경제적 요인 이외의 다른 사회적 요인, 즉 사회적 불평등이나 상대적 박탈감 등에서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로 실업률은 1998년 이후의 범죄증가를 설명하지 못하더라도, 형사사법활동을 설명할 수 있는 주요 요인으로 고려될 수 있다는 것이다. 1998년 이후의 형사사법활동은 범죄증가추세보다는 실업률의 변화와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형사사법활동이 고전이론가들이 주장하는 범죄현상에 대한 기계적인 대응이 아니라 범죄발생 이외의 다른 사

회적 요인 등을 고려한 대응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이 연구에서 분명하게 밝혀진 것은 1998년 이후 중형주의적 형사사법활동, 즉 정식기소의 증가, 실형의 증가, 수감율의 증가 등은 단지 범죄가 증가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대량실업현상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는 실업률이 낮아지는 시기부터 중형주의적 경향이 약화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한 해석을 뒷받침한다. 분명 1998년 이후의 형사사법활동이 범죄현상을 매개하지 않고 형벌을 강화하였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Rusche와 Kirchheimer(1939)의 “형벌의 노동통제가설”, 즉 형벌은 대량실업으로 인한 잉여노동을 직접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주장과 대량실업으로 인하여 나타난 간접적인 사회적 불안을 감소시킬 목적으로 형벌을 강화하였다는 주장을 비교하여 어떠한 견해가 더 적절한 것인지를 밝히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셋째로 1998년의 형벌의 강화현상은 단기적으로 구속수사에 의한 미결구금자와 자유형선고에 의한 수형자의 증가를 유발하여 교정시설의 과부하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교정시설의 과밀수용을 해결하는 방안으로는 교정기관내에서는 가석방제도를 활용하여 시설내 인원을 감소시키는 정책, 검찰의 불구속수사를 강화하여 미결수용자를 줄이는 방법, 법원에서 집행유예 및 사회내처우를 강화하는 방법 등이 제안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정책을 통하여 장기적으로는 교정시설의 입·출소의 균형과정이 나타나고, 이전의 상황으로 되돌아가는 회귀현상이 야기된다. 이는 교정기관의 조직의 향상성 유지작용으로 이해된다. 그동안 형사사법체계의 조직 및 활동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합리적이며 폐쇄적(closed) 조직론적 입장에서 접근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자연적이며 개방적인(open) 조직으로서의 형사사법체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형사사법체계는 단순히 외부의 범죄사건에 대응하는 조직이 아니라 자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외부 환경에 반응하고 적응하려는 조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는 Blumstein과 그의 동료들은 형벌의 안정성가설(stability of punishment hypothesis)을 지지한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1990년대 후반에 경험한 경기침체와 대량실업이 우리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한 관심은 높았지만,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정밀한 경험적 연구들은 적은 편이었다. 이 연구에서는 경기침체에 따른 국가의 형사사법활동의 변화를 살펴보았으며, 그러한 변화에 대한 원인과

기체에 대하여 탐색적 수준에서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 연구가 앞으로 우리 사회의 경기침체와 실업과 형사사법활동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좀 더 체계적이고 정밀한 논의와 분석을 위한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참고문헌

- 기광도. 2003. “한국의 범죄발생추세에 대한 분석: 1964-2000.” 「형사정책 연구」 53: 275-312.
- 김보환. 2002. “한국에 있어 구금현황과 그 관련요소에 관한 연구.” 「교정 연구」 17: 7-29.
- 김연형. 1994. 「시계열분석과 예측」. 자유아카데미.
- 대검찰청 1991-2006. 「범죄분석」.
- 박순진 · 이상용 1999. 「검찰과 법원의 범죄처리동향: 1985-1998」.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법무연수원. 2006. 「범죄백서」.
- 법원행정처. 1991-2006. 「사법연감」.
- 신기일. 2002. 「시계열분석」. 교우사.
- 윤옥경. 2007. “범죄통제의 사회적 맥락: 경제위기, 정치적 상황과 징역선 고율의 변화” 「형사정책연구」 18(1): 311-350.
- 이상철 · 기광도. 1993. 「범죄발생의 추세분석: 1964-1991」.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최인섭. 2002. 「한국의 범죄발생 추세분석: 1964-2001」.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최인섭 · 박순진. 1993. 「사회구조와 범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최인섭 · 이상용 · 기광도. 1999. 「IMF시대에 따른 범죄양상과 대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통계청. 2006. 「한국통계연감」.

Arvanites, T.M., and M. A. Asher, 1995. “The direct and indirect

- effects of socioeconomic variables on state imprisonment rates." *Criminal Justice Policy Review* 7: 27-53.
- Beccaria, C. 1963. *On Crimes and Punishment*, Henry Paolucci(trans.), New York: Bobbs-Merrill Press, 1963
- Berk, R.A., S.L. Messinger, D. Rauma, and J.E. Berecothea, 1983. "Prisons as self-regulating systems: A Comparison of Historical Patterns in California for Male and Female Offenders." *Law and Society Review* 17: 547-586.
- Berk, R.A., D. Rauma, S.L. Messinger, and T.F. Coolry 1981. "A Test of the Stability of Punishment Hypothesis: The Case of California, 1851-1970."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6: 805-829.
- Blumstein, A., and A. J. Berk, 1999. "Population Growth in U.S. prison Populations, 1980-1996." In M. H. Tonry and J. Petersilia(eds.). *Crime and Justice: A Review of Research*. Vol. 26.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Blumstein, A., and J. Cohen, 1973. "A Theory of the Stability of Punishment." *Journal of Criminal Law and Criminology* 64: 198-207.
- Blumstein, A., and S. Moitra, 1979. "An Analysis of the Time Series of the Imprisonment Rate in the States of the United States: A Further Test of the Stability of Punishment Hypothesis." *Journal of Criminal Law and Criminology* 70: 376-390.
- Box, S., 1987. *Recession, Crime, and Punishment*. Totawa, H.J.: Barnes & Noble.
- Box, S., and C. Hale, 1982. "Economic Crisis and the Rising Prisoner Population in England and Wales." *Crime and Social Justice* 17: 20-35.
- Box, S., and C. Hale, 1985. "Unemployment, Imprisonment and Prison Overcrowding." *Contemporary Crisis* 9: 209-228.
- Cappel, C., G. Sykes, 1991. "Prison Commitments, Crime, and

- Unemployment: A Theoretical and Empirical Specification for the U.S., 1933-1983.” *Journal of Quantitative and Criminology* 7: 155-195.
- Chiricos, T.G., and W.D. Bales, 1991. “Unemployment and Punishment: An Empirical Assessment.” *Criminology* 29: 701-724.
- Chiricos, T.G., and M.A. Delone, 1992. “Labor Surplus and Punishment: A Review and Assessment of Theory and Evidence.” *Social Problems* 39: 421-46.
- Cohen, J., 1983. “Incapacitation as a Strategy for Crime Control: Possibilities and Fitfalls.” Pp. 1-84 in *Crime and Justice: A Review of Research*, vol. 5, edited by M. Tonry and N. Morri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Cohen, L.E., and M. Felson, 1979. “Social Change and Crime Rate Trends: A Routine Activity Approach.”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4: 588-608.
- Crow, I., P. Richardson, C. Riddington, and F. Simon, 1989. *Unemployment, Crime, and Offenders*. London: Routledge
- Durkheim, E., 1893. *The Division of Labor in Society*(G. Simpson, Trans., 1933). New York: Macmillan.
- Durkheim, E., 1895. *The Rules of Sociological Method*(S.A. Solovay and J.H. Mueller, Trans., 1938).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Galster, G.C., and L.A. Scaturro, 1985. “The U.S. Criminal Justice System: Unemployment and The Severity of Punishment.”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22: 163-189.
- Greenberg, D.F., 1977. “The Dynamics of Oscillatory Punishment Processes.” *Journal of Criminal Law and Criminology* 68: 643-651.
- Hale, C., 1989. “Economy, Punishment and Imprisonment.” *Contemporary Crisis* 13: 327-349.
- Hochstetler, A.L., and N. Shover, 1997. “Street crime, labor surplus,

- and Criminal Punishment, 1980-1990.” *Social Problems* 44: 358-368.
- Inverarity, J., and D. McCarthy, 1988. “Punishment and Social Structure Revisited: Unemployment and Imprisonment in the United States, 1948-1984.” *The Sociological Quarterly* 29: 263-279.
- Jacobs, D., and R.E. Helms, 1996. “Toward a Political Model of Incarceration: A Time-Series Examination of Multiple Explanations for Prison Admission Rate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2: 323-357.
- Jankovic, I., 1977. “Labor Market and Imprisonment.” *Crime and Social Justice* 8: 17-31.
- Marx, K, 1993. “Crime and Primitive Accumulation.” “The Usefulness of Crime.” “The Labeling of Crime.” “On Capital Punishment.” in Greenberg, D.F.(ed.), *Crime and Capitalism: Reading in Marxist Criminology*. Philadelphia: Temple University Press.
- Parker, R.N., and A.V. Horwitz, 1986. “Unemployment, Crime, and Imprisonment: A Panel Approach.” *Criminology* 24: 751-771.
- Rusche, G., and O. Kirchheimer, 1968 [1939] . *Punishment and Social Structure*.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Sutton, J.R., 2000. “Imprisonment and Social Classification in Five Common-Law Democracies, 1955-1985.”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6: 350-386.

Effects of Economic Downturns on Criminal Justice in Korea,
1990-2004

Ki, Kwang D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es the effects of unemployment on crime and criminal justice in Korea from 1990 to 2001. In general, there has been the widespread acceptance of the notion that during periods of economic downturn, higher level of unemployment lead to higher levels of crime and imprisonment. Criminal justice system responds with more several punishment, when Business cycles or labor market conditions deteriorated. In the late 1990s, there has been the lack of foreign currency, lower economic growth rates, higher unemployment rates in Korea.

In the resent, the functions of criminal penalty is seem as not only retribution and deterrence, but labor and class controls. We tries (1) to review the perspectives on unemployment-crime-imprisonment relations, such as deterrence theory, Rusche and Kirchheimer's surplus labor hypothesis, and the stability of punishment hypothesis, (2) to examine the relationships between unemployment and crime or behaviors of criminal justice systems. The data that we have analysed here were obtained from official crime statistics, such as 'Analytical Report on Crime', which is published quarterly by the Supreme Public Prosecutor's Office in Korea.

Major findings of our analyses are as follows. First, Little evidence is found for the existence of a relationships between unemployment and crime, but some evidence is found unemployment-imprisonment relationships. In addition, we found that the unemployment-imprisonment relationships has been relatively stable. Second, we found

* Professor, Department of Police Administration, Daegu University, Ph.D. in Sociology.

that there have been effect to balance prison admissions and releases(parole) in an equilibrating process. These process has resulted in some stability in the growth of the prison populations.

In this paper, we has reviewed and explored the perspectives on unemployment-crime-imprisonment relationships. And we wish to contribute to the understanding and explanation of complex interrelations between unemployment and behaviors of criminal justice system during the economic downturns.

주제어 : 경기침체, 실업, 형벌, 형사사법

Keywords : economic downturns, unemployment, punishment, criminal justice